

환경관리

실무상담

(첫번째)



차 승 환
(원주환경지침지도과장)

이 글은 지난 8월 25일 원주시 카톨릭 센터에서 환경관리인 연합회가 주최한 “환경관리 법규 해설 세미나” 토론 과정에서, 일선 환경관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환경관계 법규나 고시 내용 중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청의 해석 등을 통하여 밝혀진 사항을 전국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게재하는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가.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범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2호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허가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의 20%이내의 증설, 대체 또는 개선” 으로 되어 있다. 이때 허가 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의 20%이내의 증설, 대체 또는 개선이라 함은 단위시설별 방지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위 시설별로 방지시설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방지시설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진신고기관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5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기관은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환경청 훈령 제89호 (87.6.4.)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지침장에게 자진 신고할 사업장

가. 다음의 공업단지 또는 지역안의 사업장



- 1) 공업단지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 2) 공업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
- 3)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지개발구역
- 4) 지방공업개발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
- 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
- 6)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다음의 공업지역
가) 부산 사상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나) 서대구 공업단지
다) 대구 제 3 공단

나. “가” 항목의 공업단지 및 지역 외의 다음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대 기 분 야)

- 1) 법 제 2 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2)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 1000톤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고체연료라 함은 무연탄을 말하고, 대상시설의 연료 사용량은 시설용량을 말하며, 고체연료의 환산방법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수 질 분 야)

- 1) 법 제 2 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2) 1일 폐수배출량 500m³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폐수 배출량은 시설용량을 말한다.)

다. 배출업소 종별 산정 기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8, 주3 및 동규칙 제43조 별표12, 주 1 에 의하면 “대상시설의 폐수 배출량은 시설용량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설용량의 기준은 폐수 배출시설을 100% 가동할 때의 최대 폐수 배출량을 말하는 것이다.

라. 일산화탄소(CO)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6, 배출허용기준중 일산화탄소 배출시설의 범위가 “가” 열공급시설 “나” 소각시설 및 시멘트소성로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시설(예시, 금속의 용융, 제련, 기타 전기 등에 의한 열처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배출시설 변경 허가 범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배출시설 변경허가 범위 대상시설중 ①가스입자상 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 대상시설 “4”에 의하면 “기허가된 시설보다 10%이상 증설의 경우로 되어 있고 ②폐수 배출시설 대상시설 “1”의 “기허가된 시설보다 20%이상 증설의 경우”로 되어 있는바, 이 때 기허가된 시설의 기준범위는 ①가스 입자상 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는 각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②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단위 방지시설별로 이에 속하는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바. 대기 기술감리면제 범위

환경청 고시 87-3호(87. 3. 17.) 감리대상 방지시설과 방지시설의 종류, 규모중 대기분야 기술감리 제외시설 “口”에 의하면 “오염물질 또는 배출가스량이 당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보다도 1할 미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증설 또는 개선비용이 1000만원 미만 소요되는 경우”는 기술감리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당초 배출시설의 기준은 단위시설(공정)별 방지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사. 표준산소 농도적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유량산정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가스 및 분진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 규모나 사용연료, 업종에 따라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배출농도 및 유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농도

○ 배출농도 = 실측농도 × 표준산소농도적용

$$\left(\frac{21 - \text{표준산소농도}(\%)}{21 - \text{실측산소농도}(\%)} \right)$$

(2) 유량산정

일일유량 : 일일측정 유량 ÷ 표준산소농도적용공

$$\text{기비} \left(\frac{21 - \text{표준산소농도}(\%)}{21 - \text{실측산소농도}(\%)} \right)$$

예)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분진을 측정한 결과 배출농도가 250mg/Sm³이고 실측산소농도가 15%, 일일측정유량이 50,000Sm³ 일 경우(표준산소농도 13%, 배출허용기준 300mg/Sm³)

○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begin{aligned} \text{배출농도} &= 250\text{mg}/\text{Sm}^3 \times \left(\frac{21 - 13(\%)}{21 - 15(\%)} \right) \\ &= 333.3\text{mg}/\text{Sm}^3 \end{aligned}$$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초과분

$$\begin{aligned} 333.3\text{mg}/\text{Sm}^3 - 300\text{mg}/\text{Sm}^3 \\ = 33.3\text{mg}/\text{Sm}^3 \end{aligned}$$

○ 유량산정

$$\begin{aligned} \text{일일유량} &= 50,000\text{Sm}^3 \div \left(\frac{21 - 13}{21 - 15} \right) \\ &= 37,500\text{Sm}^3 \end{aligned}$$

참고

위의 산정방법은 실측산소농도가 표준산소농도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음호에 계속〉

“나는 글을 잘 ...”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일출 때, 펜을 잡으십시오. 마음을 편히 하고 얘기하듯 여러분의 언어로 천천히 써내려가십시오. 이런 글을 연합회에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가슴에 앓았던 작은 일들, 현장일기문, 꿈뜨, 소설, 詩, 혹은 토막소식(회원승진, 환경관련업체 단신 동정 등), 환경관계자료(사진, 삽화)

게시판

- 어느 것이라도 본 연합회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회보는 여러분의 이러한 정성으로 엮어짐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회보 발행 부수 7000부

본 회보는 기존 6000부로 발행-공급되어 오다가 지난 10월호부터 천부를 추가하여 현재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